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여 납세자 이해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탁규정 삭제

-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구금고에 예탁한 경우 6개월 초과시에 공탁해야 하는 규정 삭제(제17조)

나.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알 권리 증진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제39조)

다.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 (1) “우편”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제2조)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제8조)
- (3) 제목 및 본문 내용 등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 (제9조·제10조)
- (4)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제14조제1항 중 “미납구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 구세”로 개정(제14조)
- (5)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제18조)
- (6)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명확화 :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개정 (제22조)
- (7) 통일성 있는 조문구성을 위해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용어 수정(제23조)
- (8)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 삭제(제19조제1항, 제24조, 제29~제31조)
- (9)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 제45조)
- (10)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제1항 각호”로 인용조문 수정(제4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820-9794, FAX : 820-9991, E-mail:chongran@dongjak.go.kr)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우편”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고, “단, 구청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 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9조 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보통우편 송달부”는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본문 내용 중 “보통우편”을 모두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미납구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로 하며,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공탁 등”은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며, 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압류할 수 있다”를 “압류한다”로 한다.

제19조 제1항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의 “제67조 및 제68조”를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부과징수하여야 ”를 “부과징수”로 한다.

제24조는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공탁수령증”은 “공탁영수증”으로 제2호 중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는 “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으로 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중 “자력”은 “자력(資力)”으로 한다.

제28조 중 “3월”은 모두 “3개월”로 한다.

제29조에서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 중 “유보하여야 한다”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중 “유보기간”은 “보류기한”으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10일”은 “1개월”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법정기일 전 1년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으로 하고 “통정한”은 “서로 싸고한”으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 제1항 각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p>제2조(정의)</p> <p>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2. <삭 제></p>
<p>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p> <p>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u>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신 설></p>	<p>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p> <p>① -----제26조 제1항에----- -----기한 만료일 <u>3일 전까지</u>----- -----.</p> <p>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 <u>보통우편</u>-----.</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 <u>일반우편</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u>보통우편</u> 송달부) <u>보통우편</u>의 방법으로----- -----<u>보통우편</u> 송달부는----- -----.</p>	<p>제10조 (<u>일반우편</u> 송달부) <u>일반우편</u>----- -----<u>일반우편</u>----- -----.</p>
<p>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u>미납구세</u>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u>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u>의 열람 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삭제></p>
<p>제17조(<u>공탁</u> 등) ①----- <u>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u> 다만,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p>	<p>제17조(<u>교부금전</u>의 예탁) ①----- <u>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u> <삭제></p>
<p>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u>압류할 수 있다.</u></p>	<p>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 ----- -----<u>압류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p> <p>①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p>	<p>제1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p> <p>① 삭제</p>
<p>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p> <p>① 세무공무원은 영 <u>제67조 및 제68조</u>에 ----- ----- -----</p>	<p>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p> <p>① 세무공무원은 영 <u>제80조 및 조례 제22조</u>에 ----- ----- -----</p>
<p>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p> <p>법 제84조에 따라----- -----구세를 일시에 <u>징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 ----- <u>부과징수하여야 한다.</u></p>	<p>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p> <p>법 제84조에 따라----- -----구세를 일시에 <u>징수할 수 있다.</u> 이 경우----- ----- <u>부과징수 한다.</u></p>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p> <p>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p> <p>① (생략)</p> <p>1. 현금·유가증권의 <u>공탁수령증</u></p> <p>2. <u>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u></p> <p>3.~ 5. (생략)</p> <p>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해당권 설정을 필한 <u>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u></p>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공탁영수증</u></p> <p>2. <u>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u></p> <p>3.~ 5. (현행과 같음)</p> <p>6. ----- ----- -----<u>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u></p>
<p>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p> <p>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u>자력</u>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p>	<p>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p> <p>③----- ----- ----- ----- -----<u>자력(資力)</u>----- ----- -----.</p>
<p>제28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p> <p>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u>3월</u>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u>3월</u>이 경과하도록 납세 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제28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p> <p>----- ----- -----<u>3개월</u>-----, -----, <u>3개월</u>----- ----- -----.</p>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색) ~ 제31조(참여자의 설정) (생략)	제29조(수색) ~ 제31조(참여자의 설정) <삭제>
<p>제37조(공매처분 유보)</p> <p>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u>유보</u>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u>유보기간</u>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p>제37조(공매처분 유보)</p> <p>① ----- ----- ----- -----<u>보류</u> <u>할 수 있다.</u></p> <p>② -----<u>보류기한</u>은 ----- ----- -----.</p>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u>10일간</u> 공고하여야 한다.</p>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p>③ ----- ----- -----<u>1개월간</u> -----.</p>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p> <p>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u>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u> 한 경우에는 <u>통정한</u>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p>	<p>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p> <p>② ----- -----<u>법정기일 전 1년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u> -----<u>서로 짜고한</u> ----- ----- ----- -----.</p>
<p>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p> <p><u>법 제141조</u>에 대한 사항을 ----- ----- -----.</p>	<p>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p> <p><u>법 제141조 제1항 각호</u>에 대한 사항을---- ----- -----.</p>